

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: 서윤기 의원 외 42명
- 나. 의안번호: 제1652호
- 다. 발의일자: 2020. 7. 13.
- 라. 회부일자: 2020. 7. 14.

2. 제 안 사 유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도록 함(안 제34조제6항).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: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2020년 4월 2일,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중 인권영향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62개 자치법규의 96개 조항에 대한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.

〈자치법규 분야 인권영향평가 권고내용 중 현행 조례 관련 사항〉

연번	인권영향평가 항목	개정 권고 조항	권고사유
6	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미비로 인한 구제권 제약	20	과태료가 부과징수되는 경우,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(조항)를 마련하여 시민의 구제권 확보

- 이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누락되어 있는바 시민들의 구제권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임.

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가 부과·징수되는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(조항)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구제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.

다만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르면 관련 용어를 “이의신청”이 아니라 “이의제기”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임.

- 한편, 서울시는 현재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, 의견제시에 관한 내용과 기간도 동시에 통보하고 있음.

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4건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으나, 이 중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전무한 상황이며, 그 이유는 위반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있기 때문임.

〈과태료 부과건수 및 이의신청 현황〉

과태료명	구분	2018	2019	2020.6	비고
환경영향평가 조례위반과태료	과태료(건)	7	5	2	위반내용 확인 후 과태료 부과로 이의신청 제기 사례 없음
	이의신청(건)	-	-	-	

〈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〉

구분	1차 위반 과태료		
	100만원	300만원	500만원
부과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초자료 보존의무 불이행 · 관리대장 비치 의무 불이행 등 · 사후영향조사결과 미통보 · 사업의 착공·준공·중지 통보 미이행 · 사업자 변경 시 승계 받은 협의내용 및 이해상황 등 통보 의무 미이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평가서 거짓작성 · 평가절차 누락 후 공사진행 · 공사와 평가서 작성 업무 분리계약 의무 불이행 · 평가서 등과 그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 · 사후관영향조사 미실시(일부) · 협의내용 조치명령에 대한 불응 · 협의절차 완료 이전 공사시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후관영영향조사 미실시(전부) ·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조치 명령 불응을 이유로 한 공사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· 협의내용 이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린 공사 중지 등의 조치요구에 불응